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백승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21
----------	-------

발의연월일 : 2024. 9. 5.

발 의 자 : 백승아 · 박홍배 · 황정아
조인철 · 김동아 · 최기상
김남근 · 박홍근 · 김준혁
박해철 · 임미애 · 오세희
정준호 · 이광희 · 조계원
이훈기 의원(16인)

제안이유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1~84 사이에 속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명 정도, 학령기 학생 중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의 경우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족들의 부담도 상당한데, 이러한 고통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정부와 교육당국은 각각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도 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21대국회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

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업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사회성 등의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경계

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원센터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업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사회성 등의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업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 학생의 기초학력, 사회성 발달, 진로 및 직업교육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 학생 가족 지원 및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6.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7.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2.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자료조사·연구
3.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조기 발견 및 실태조사 지원
4.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지원
5.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가족 지원 및 부모교육 실시
6.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실시
7.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8.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9.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지원센터 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